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金 宇 盛*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Eo-chon-gye

目 次

I. 序 言	(2) 共同漁場의 性格
1. 研究目的	(3) 共同漁場의 利用制度
2. 研究對象	3. 漁村契 自治의 實態
3. 研究方法	4. 共同漁場의 所有實態
II. 漁村契의 理念과 目的	5. 共同漁場의 利用實態
III. 漁村契의 組織과 事業	V. 漁村契의 活性化를 위한 研究
1. 漁村契의 組織	1. 共同漁場의 協業化
2. 漁村契의 事業	2. 觀光漁村의 共同化
IV. 漁村契 現況	3. 漁民의 意識構造 改善
1. 總 括	4. 漁村指導者 및 漁民後繼者育成
2. 共同漁場의 性格 및 利用制度	VI. 結論 및 建議
(1) 共同漁場의 意義	

I. 序 言

1. 研究目的

우리나라는 과거 수차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추진에 의하여刮目할만한 高度成長을 하여와 이 제는 水産業界에 있어서도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漁村의 勞動이 第2, 3次 産業으로 流出되고, 臨海工團의 設置, 都市의 發達 및 大型化, 強力殺菌性 農藥使用의 增大등으로 沿岸漁場을 荒廢化시켜 그 生産性和 漁民 所得水準을 農工業보다 훨씬 낮게 하였으며 漁民 大部分의 兼業依存度를 높이고 專業漁家數를 減少 시켰다. 이와같은 漁村의 變모에도 불구하고 水協은 그 存在基盤인 沿岸漁民의 保護와 救濟를 위하여 今後 漁村契를 통하여 沿岸共同漁場과 漁村共同施設을 管理시키는 同時에 漁場生産性의 提高을 통하여 漁民經濟를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漁村契는 1962年の 水協法の 制定·實施와 同時에 創設된 地區別 水協의 下部 末端協力體로서의

* 統營水産專門大學 教授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部落組織이나 그 동안 그의 役割과 機能을 거의 發揮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結果 “漁場은 漁民으로”라고 하는 漁場要求마저도 形式的으로 運營되고 事實상에 있어서는 地域의 少數 有志나 商人資本家에 의해서 行使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沿岸漁家漁業은 如前히 小規模經營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기에서 漁村契로 하여금 그의 役割과 機能을 強化함으로써 漁村近代化를 促進시킬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漁村契의 추진과정에서 있어서 기존 水協組織과의 關係에서 그의 活性化 方向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漁村契運動의 成敗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本 研究는 漁村契의 基本課題와 그 活性化를 위한 活動方向設定을 위하여 필요한 理論體系를 確立하는데 目的을 두고있다. 이러한 目的 달성을 위한 筆者의 意圖가 本 研究에서 어느 정도 充足될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研究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의 試圖 該 自體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研究對象

본 文의 研究대상은 水協法에 근거를 두고 全國沿岸에 설립되어 있는 모든 漁村契이다.

漁村契는 水協中 地區別水協의 組合員이 行政區域, 經濟圈 등을 중심으로 組織하는 下部組織으로서 水協運動 最末端 組織體이다.

그런데 이러한 水協團體中 漁村契를 研究대상으로 선정할것은 漁村契가 첫째, 漁民들의 人的結合에 의한 독립된 單位團體로서의 經濟的 構成體이고 둘째, 傳統的인 漁民의 協同體이며 셋째, 순수한 漁民의 協同體일뿐더러 넷째, 古來의 契를 該 歷史的 背景으로 하는 協同體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漁村契는 該 자체가 하나의 獨立된 協同組織體인 동시에 우리나라 水協運動에 있어서 가장 소규모의 地域單位 經濟構成體로서의 特色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該 土着的·傳統的인 協同精神을 가지는 漁民組織은 이미 地區別水協이나 業種別水協 등에서는 그의 特色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로지 漁村契에서 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漁民所得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漁村契의 活性化는 다른 어느 水協보다도 漁村契를 研究하는 것이 該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여 全國의 漁村契를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3. 研究方法

漁村契의 기초적 研究로서 該 歷史的 背景은 어디에 있으며, 그의 理念과 目的은 漁村契와 어떻게 結合하고 있는가 또 該 現實과 將來는 어떠한가 등을 實證的 理論的으로 考察하도록 하였다.

漁村契는 主體性있는 운영을 행하는 일종의 企業으로서 行動實踐理論에 의해서 그의 存立과 發展이 可能하기 때문에 그것을 機能的 制度的 側面에서 考察하는 것이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該 러한 角度에서 研究하였다.

Ⅱ. 漁村契의 理念과 目的

漁村契는 水協法에 依據하여 탄생된 組織이며, 地區別 水協의 組合員에 의하여 구성되는 經濟構成 體이다. 따라서 漁村契는 水協法에 의하여 생긴 法律形態이며, 協同組合의 一種이다. 水協法에 의하면 「漁村契는 漁村契員의 生産力の 增進과 生活向上을 위한 共同事業의 수행 및 그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漁村契는 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목적수행단체라고 할 수 있다.

Ⅲ. 漁村契의 組織과 事業

1. 漁村契의 組織

漁村契의 主體는 契를 組織하는 契員으로 구성되며, 水協法에 의하면 同法 第16條의 2에 「地區別 水協의 組合員은 行政區域, 經濟圈 등을 중심으로 漁村契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組合員의 자격으로는 「그 업무구역내에 주소나 거주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민¹⁾으로서 1年을 통하여 60일 이상 漁業을 經營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라야 한다」로 되어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漁村契員의 資格은 地區別 水協의 組合員에 限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漁村契의 業務區域은 特別한 경우가 없는 한 自然部落 範圍로 하는 小區域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2. 漁村契의 事業

漁村契는 그의 目的達成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 共同事業을 목적으로 하여 事業을 할 수 있도록 水協法 施行令 第16條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지도사업
- ②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 ③ 소속 지구별 조합이享有하는 어업권의 행사
- ④ 漁民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 ⑤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⑥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사업
- ⑦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 ⑧ 어민의 후생복지사업
- ⑨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 ⑩ 신용사업
- ⑪ 契員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 ⑫ 정부 또는 水協이 위촉하는 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 同一家口內에 2인이상이 있을 때는 그 중 年長者 1인에 한한다로 되어 있다.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 ⑬ 제①~제⑩호에 부대하는 사업
- ⑭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그것이다.

Ⅳ. 漁村契 現況

1. 總 括

漁村契는 1962年 水協發足과 함께 漁民의 部落協同體로 설립된 수협의 下部組織이다. 契員의 生活安定과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共同事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漁村契는 初期의 共同事業으로는 漁村共同施設과 共同漁村管理의 두 부문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활동도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선 후 漁村 새마을 運動의 확산으로 漁村契 事業은 점차 침체에서 벗어나 漁村環境整備, 漁場開發, 增養殖事業, 生産物의 共同販賣, 相互金融의 여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로서도 기능함에 따라 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어촌계육성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어촌계수는 1972년까지 全國 2,258個에 달했으나, 1973년에 1,641個로, 1978년에는 1,436個로, 다시 1983년말에는 1,463個로 정비되었다.

한편 漁村契의 운영과 대외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漁村契의 法人化를 가능하게 水協法을 改正하여 1978년에는 44個의 漁村契에 대해서 法人格을 부여하였다. 漁村契에 대한 全國의 總括的인 分布狀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고, 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경기도 4.7%, 강원도 4.1%, 전북 3.5%, 전남 48.4%, 경북 8.8%, 경남 20.0%, 충남 5.1%, 제주도 4.9%로 분포되어 있어 全國의 약 69%가 全南과 慶南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水協中央會에서는 漁村契를 發展水準別, 立地類型別, 從事類型別로 분류하여 評定基準과 方法에 의해 評定

<표 1> 全國 漁村契 (總括) 1983. 12. 31 現在

區分 支部別	漁 村 數	發展水準別			從事類型別			立地類型別			構成里 (洞)數	構成員數		島嶼	沿岸
		福祉	自營	自立	漁船 漁業	增養 殖業	複合	都市 近郊	脆弱 地區	沿岸 村落		契員	準契員		
計	1,463	64	442	957	379	762	322	178	317	968	3,213	130,674	13,453	496	967
京 畿	70	5	37	28	15	41	14	8	35	27	257	9,574	365	35	35
江 原	61	3	17	41	48	—	13	21	1	39	131	5,861	1,298	—	61
忠 南	75	5	39	31	19	38	18	9	27	39	288	11,337	2,556	15	60
全 北	52	2	12	38	25	4	23	4	29	19	196	4,667	123	16	36
全 南	709	20	182	507	84	559	66	48	183	478	1,261	50,545	7,878	358	351
慶 北	129	6	36	87	60	—	68	8	5	116	201	9,825	—	—	129
慶 南	294	10	91	193	123	58	113	66	29	199	737	24,196	1,233	64	230
濟 州	73	13	28	32	5	61	7	14	8	51	142	14,669	—	8	65

하고²⁾ 있는데, 1983年末 現在로 發展水準別로는 全 漁村契의 65.4%가 自立漁村契, 30.2%가 自營漁村契, 4.4%가 福祉漁村契로 自立漁村契가 가장 많고, 立地類型別로는 沿岸村落型이 66.2%, 脆弱地區型이 21.7%, 都市近郊型이 12.1%로 되어있어 沿岸村落型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從事類型別로는 增養殖漁業型이 52%, 漁船漁業型이 26%, 複合型이 22%를 이루고 있어 增養殖 漁家漁業이 過半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共同漁場의 性格 및 利用制度

(1) 共同漁場의 意義

우리나라에 있어서 共同漁場의 基本的 性格은 日帝下 漁場制度의 殘滓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現行 漁場制度는 魚貝藻類의 繁殖保存을 위하여 自己 마을의 地先漁場을 隣接漁村의 侵入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漁村共同體의 社會經濟的 目的意識에서 合理化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共同體的 規制에 의하여 利用·管理되는 漁場은 經濟的 價値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土地生産의 觀點에서 舊態를 固守하고 있는 것이다.

水産業法에 의하면 漁場이란 免許를 받은 漁業을 하는 一定한 水面이라고 規定하고 있다(水産業法 第8條 第2項). 그리고 免許를 받아야 하는 漁業은 養殖漁業, 定置漁業, 第1種, 第2種, 第3種 共同漁業이라고 되어있다(同法 第8條 第1項). 따라서 共同漁場이란 곧 水産業法上的 규정에 의한 第1種, 第2種, 第3種의 共同漁業을 수행하는 場所로서의 水面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漁村契에서 말하는 共同漁場이란 上記의 共同漁業漁場이외에 漁村契나 水協에서 향유·행사하는 共同養殖漁場, 定置漁場, 其他 共同漁業이 수행되는 水面場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漁村契에 있어서의 共同漁場이라 할 때에는 협의로는 共同漁業權漁場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共同漁業漁場과 그 외에 漁村契가 향유 또는 행사하는 모든 水面場所를 포괄한다고 규정함이 옳을 것이다.

2) 漁村契 分類 評點은 同 評點表의 評價方法에 따라 6個部門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여 그 評價得點이 90點 以上인 漁村契는 福祉漁村型, 80點 以上인 漁村契는 自營漁村型, 80點 未滿인 漁村契는 自立漁村型으로 분류하였다.

① 評定部門

部 門 別	項 目	配 點	評價方法
合 計	15	100	
組 織 體 系	2	10	絶對評價
精 神 啓 發	2	10	"
所 得 增 大	1	20	"
事 業 經 營	2	10	"
厚 生 福 祉	4	25	"
生 産 基 盤	4	25	選擇評價

② 評定制定

- 福祉漁村契: 評定得點 90點 以上
- 自營漁村契: " 80 "
- 自立漁村契: " 80點 未滿으로 하고 있음.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2) 共同漁場의 性格

共同漁場의 性格은 共同漁業의 種類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性格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가) 一定한 水面으로 한정되고 전용되는 水面區域이다.
- (나) 주로 定着性 또는 接岸性 水産動植物을 채포 또는 養殖하고 있다.
- (다) 水質汚濁 또는 干拓 등에 의하여 漁場價値가 소실되기 쉽다.
- (라) 沿岸居住의 零細漁民의 共同利用 漁場이다.

(3) 共同漁場의 利用制度

漁村契에 있어서 共同漁場의 主軸은 第1種 共同漁業과 養殖漁業의 漁場이다.

이들 漁業에 있어서의 漁場利用의 現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水産業法에 의한 漁場利用制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種 共同漁場은 貝類, 藻類 以外에 水産廳長이 定하는 定着性 水産物의 채포를 목적으로 하는 漁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現在 定着性 水産物로서 水産廳長이 指定·公示한 것을 보면 「우렁쉥이, 성게, 해삼, 문어, 낙지, 게, 갯지렁이」의 7種으로 되어 있으며, 漁場은 最干潮時의 海岸으로부터 平均水深 10m以內의 범위 안에 설치하게 되어있고³⁾, 또 그 漁業은 全國海岸에 大部分 散在하고 있다. 그리고 그 漁場以內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無人島, 落島, 孤島등 실질적으로 공동행사를 할 수 없는 水面에 대해서는 면허를 못하게 되어있다.

第2種 共同漁場은 地引網, 地漕網, 船引網, 頼引網, 揮羅網, 焚寄抄網, 들망 등의 7가지 어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어업의 漁場은 最高潮時의 海岸線으로부터 500m 以內의 水面에 設定하게 되어 있으므로 接岸洄游하는 어류를 채포하는 종업원 10명 전후의 소규모의 소극적이고 기동성이 약한 연안어업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第3種 共同漁場은 建網, 設網, 引網, 繰網, 旋網, 集魚漁業 등으로 小型定置網 漁業과 같이 그물 어구를 이동하지 않도록 부설하여 영위하는 漁業과 어구를 이동하되 비교적 그의 이동성이 적은 어업으로서 接岸洄游해 오는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漁業을 하는 漁場은 最高潮時의 海岸線에서 1,000m 이내(경기, 충남, 전북에 있어서는 2,000m)에 설정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들 第1~第3 共同漁業權者들의 漁業管理는 年1回以上の 磯洗, 築磯, 投石, 魚付林의 造成, 種苗의 投入, 기타 필요한 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증식관리수단과 조업구역, 조업기간의 제한, 어획물의 채장제한 등의 자원관리수단에 의해서 자원의 유지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되어있다.

養殖漁場은 一定한 구역내에 양식시설을 하여 영위하는 양식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水産業法의 규정에 의하면 그의 명칭, 구분, 어장수심, 수면한계, 어장간거리 및 채포방법은 <표 2>에서와 같이 되어있고, 그 漁場의 위치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나 淺海 干潟地에 설치하게 되어

3) 강원, 경북, 제주는 15m, 해조예인망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도 수심 15m의 범위내에서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 산 경 영 본 집

<표 2> 양식어업의 명칭·구분·어장수심·수면한계·어장간거리 및 채포방법

(개정 81.8.26 대통령령 10449)

명 칭	양 식 물 의 종 류	어장수심 (단위 m)	수면한계 (단위 ha)	어 장 간 거 리 (단위 m)	채포방법(면허시에 적정방법을 지정함)	
					도수, 기타 채취기	도수, 나잡, 범선형망, 기선형망, 잠수기
1. 살포식(간사지) (천 해)	백합, 꼬막, 반지락, 가두락, 기타 유용패류	0	100이상	100이상	도수, 기타 채취기	
	피조개, 새꼬막홍합, 기타 유용 수산동식물	40이내	30이내	100~200	도수, 나잡, 범선형망, 기선형망, 잠수기	
2. 투석식(간사지) (천 해)	굴	0	20이내	100이상	도수	
	전복, 소라, 돌김, 우무가사리, 꼬시래기, 기타 유용수산동식물)	30이내	300이내	200이상	도수, 나잡, 캐취기, 잠 수기	
3. 건홍식(일본홍)	김, 파래, 굴	0	—	100이상	도수	
건홍식(엽홍)	김, 파래	0	—	200이상	도수, 선상도수	
건홍식(부홍)	김, 파래	5	—	300이상	도수, 선상도수	
건홍식(망홍)	김, 파래	7이내	—	300이상	선상도수, 선상채취기	
건홍식(부류망홍)	김	10이내	—	500이상	선상도수, 선상채취기	
4. 수하식(간이)	굴, 기타 유용수산동식물	2이내	5이상	100이상	도수, 선상도수	
수하식(연승)	굴, 진주패, 홍합, 가리비, 미역, 다시마, 멧게, 기타 유용수산동식 물	20이내	20이내	100~300	선상권양기	
수하식(뱃목)	굴, 진주패, 기타 유용수산동식물	30이내	30이내	100~500	선상권양기	
5. 가두리	방어, 복어, 도미, 기타 유용수산 동식물	30이내	10이내	300이상	선상채취기, 조망	
6. 축제식	새우, 기타 유용수산동식물	10이내	—	—	조망, 자망, 인망, 기 타 채취기	

있다.

이들 중에서 비교적 近代的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서는 굴양식의 뱃목, 연승 등의 수하식시설을 들 수 있으나, 單位養殖施設에 대한 상시종사자수는 극히 소수에 한정되고 있다. 양식어업권은 漁村契 또는 水協에 단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漁村契員의 대다수의 희망에 좇아 漁村契所有의 共同漁業權 어장이 대단히 많다.

現在 共同漁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중 먼저 그 方法부터 살펴보면 아주 다종 다양하다. 1977년 의 水協調査에 의하면 第1種 共同漁場의 採取 採捕權은 特定人에 賃貸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漁村契에서는 사실상 특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漁村契에서 共同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어장구역을 개개의 계원에게 분할하여 실질상 개인 행사

<표 3> 全 國 漁 業 權 現 況 1982. 8. 31 현재

種 類	件 數	漁 村 契	水 協	協 業	個 人		
					計	1 種 內	1 種 外
計	9,783	4,154	1,549	1,433	2,647	615	2,032
養殖漁業權	6,414	1,832	1,082	1,433	2,067	436	1,631
定置漁業權	696	101	15	—	580	179	401
第1種 共同漁業權	1,636	1,603	33	—	—	—	—
第2種 共同漁業權	94	46	48	—	—	—	—
第3種 共同漁業權	943	572	371	—	—	—	—

자료: 수산청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토록 하는 경우와 漁村契에서 직영하여 공동채취, 공동판매, 공동계산등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後者の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제3종의 공동어업에 있어서는 特定 契員에게 행사시키고 있으며, 特定 契員의 선정은 추천 또는 입찰에 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이 공동어업권에 의한 共同漁場의 활용이 賃借나 추천, 입찰에 의해서 特定人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共同漁業權설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어업권수를 참고로 들어보면 그 현황이 <표 3>의 내용과 같다.

3. 漁村契 自治的 實態

漁村契의 任員으로서는 法人契의 경우에는 契長 1人, 理事 3~5人, 監事 2人 이하를 두며, 法人이 아닌 契에 있어서는 契長, 幹事 및 監事 各1人을 두고 있다.

契長과 감사는 契員中에서 소속 地區別 水協 組合長이 임명하며, 幹事は 契員中에서 契長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漁村契의 契長·理事 및 幹事は 任期3年으로 하고 監事は 任期 2年으로 하고 있다. 그 중 契長의 任期別 구성을 동해안의 厚浦水協管内 漁村契에서 보면 1회가 36.5%, 재임명이 23.1%, 나머지는 기타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4. 共同漁場의 所有實態

漁村契의 主要機能의 하나는 漁業權管理이다. 이는 水協法에 「漁業權의 취득과 開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漁村契는 처음부터 漁業權의 管理團體의 색채가 강하며 地域 水產團體로서 출범하고 있다. 1975年의 第9次 水產業法改正에 있어서는 同法の 免許의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인 第27條를 개정하여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漁村契를 第1順位로 하였다. 그러나 法人格을 가지지 않았던 당시의 漁村契는 水協所有의 漁業權을 賃借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뿐이며, 漁村契 그 自體가 權利의 主體가 되어 漁業權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법을 개정하여 非法人漁村契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漁村契 總有形態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非法人漁村契도 總有形態로 漁業權을 향유하게 되었고, 地先漁場에 대한 공동어업권의 總有가 된 것이다. 그 후 수차의 改正을 거쳐 우리나라의 전 어업권을 漁村契에 집중시키기 위한 水產業法 第27條의 改正運動이 태동하여 1982년에는 공청회를 갖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한 대로 소유어업권자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일시적이거나 주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단행한 것과 같은 구 어업권의 일제소멸에 의한 어업권의 전면적 개폐라는 제도적 개혁은 없었지만, 水產業法의 간헐적 개정을 통하여 漁民의 漁場利用體別의 확립이라는 목표에의 점진적 접근을 행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최근의 水產業法 改正運動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이라고 보아진다.

5. 共同漁場의 利用實態

漁村契의 共同漁場 利用狀態를 동해안에서는 厚浦水協, 남해안에서는 忠武市水協管内의 漁村契의 事例를 들어 참고토록 하며 서해안의 것은 차후의 조사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厚浦水協管内의 共同漁業權의 주요한 것은 第1種 共同漁業, 定置漁業이며, 養殖漁業, 第2·3種 共同漁業도 있으나 이들의 비중은 낮다.

厚浦水協管内에서는 第1種 共同漁業 種目中에서 미역채취업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미역의 채취장은 자연산 미역이 착생하는 碛암(蘗岩)이라 불리우는 바위이며, 그 이용상태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그 배분부터 보면, 碛암의 이용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으로서는 平等의 原則이 완전히 관철되고 있다. 미역채취자는 碛암의 수에 맞추어 일정수의 조로 편승하여 각 조가 할당된 碛암에서 미역을 채취한다. 각조의 인원수는 배분되는 碛암의 豐度差에 의하여 다르며 생산성이 높은 碛암에서는 그것이 낮은 것에 비하여 많은 인원수가 배정되고 그 인원배정은 채취에 앞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각 碛암의 생산성은 일정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채취조는 매년 추첨으로 재편성하며, 권리행사의 평등화와 이익균등을 위한 주도 면밀한 배려를 쏟고 있다. 碛암의 추첨은 음력 6월경에 행해지고 있고, 그 채취는 다음해 4~5월에 실시되는데 碛암의 관리상 碛암을 일찌기 배분하여 그 磯洗 등을 행하고 있다. 미역의 채취는 채취조를 경영단위로 하는 공동경영의 형태로 행하고 있으며, 채취작업에는 일반적으로 조원 전원이 참가하여 채취한 미역을 작업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미역은 海女를 고용하여 채취시키고 있다. 미역채취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구관습이 존중되고 있는 점이며, 이들 사항에 관한 것은 洞自治規約에 따라 오랜 옛날부터 慣行權이 있는자, 分家 또는 새로 移洞하여와 滿1年以上이 된 어업권자, 本洞에 살며 滿3年以上이 된 非漁村契員 등에 대하여 미역채취행사권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自己事情에 의하여 他地로 轉出時는 미역채취행사권을 洞에 返還하고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는 그 代金を 몰수하고 그 행사권을 중지시키며 家屋을 소유하지 않고 2個月以上 기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 행사권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제1종 공동어업권은 모두 漁村契가 영위하고 있으며, 미역을 제외한 채포대상이 되고 있는 수산동식물로는 전복, 백합, 성게, 해삼, 우렁행이, 잡어, 우뚝가사리, 청각 등으로 되어있다.

第2種 共同漁業은 水産業法上에 一定한 수면을 전용하여 焚寄抄網등 7가지 그물어구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漁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厚浦水協管内 漁村契의 것은 모두 地引網 漁業으로 되어있다. 과거 이 地方에서는 주로 정어리 대상의 地引網漁業이 성했다. 경영형태는 평등한 출자·노동·분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第3種 共同漁業은 一定한 水面을 전용하여 水産業法 第8條 第2~第5號以外的 그물어구나 낚시어구 기타 도지사가 定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그 구체적인 명칭은 水産廳告示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이 어구에는 壺網, 擧網등 몇 종류의 소형정지망이 포함되어있다. 이 漁業의 經營도 共同漁業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참가자는 모두 資本加入과 노동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定置漁業은 水産業法 第8條 第1項 第2號 규정에 定置漁業이란 「一定한 水面을 圍획하여 大敷網·大謀網·改良式大謀網·落網·角網·入角網·小台網 또는 竹防簾의 여덟가지의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비교적 큰 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이라고 되어있다. 厚浦水協管内에서는 그 중 주로 改良式大謀網을 사용하는 정치어업이 성행되고 있다. 정치어업권은 漁村契總有와 共有의 두종류가 있는데 前者는 거의 최근에 신규면허를 받은 것이고, 後者는 공동어업권희망자가 個人單有漁業權을 매수하여 공동소유로 한 것이며 個人單有의 정치어업권이 없어진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업권의 漁村契 所有化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이는 私有漁業權者들이 언젠가는 定置漁業權도 漁村契에 이양될 것이라는 예견하에 1970年代에 그 漁業權을 共同經營 희망자들에게 매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定置漁業의 경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공동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非法人 漁村契의 總有로 되어있는 定置漁業權의 實例를 들어보면 箕城里的 改良式大謀網漁業은 漁村契員 168名이 全員 참가하여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데, 1人 1株, 조업종사자수 26人, 결석비 1일 5천원~6천원, 수익의 분배는 총수입에서 공동경비를 차인한 잔액의 30%를 조업종사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모두 株主인 漁村契員에게 平等分配하고 있다.

양식어업이란 「一定한 水面을 구획, 기타의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며 漁村契總有의 漁業權中에는 양식어업도 있다. 管内 直山 1里의 미역양식의 實例를 보면 그 경영이 계절전원이 참가하는 것을 漁村契 自營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漁村契員 5~6人의 공동경영인것 같았다.

이러한 것들을 남해안의 忠武市水協管内에서 보면 동해안의 厚浦水協管内와 같은 것이 많으나, 특이한 것은 第1種 共同漁業에서 굴, 홍합, 해삼, 전복, 피조개, 반지락, 미역, 툫, 김 등의 종류가 많고, 第2種 共同漁業에서는 船引網漁業의 멸치 어획이 크며, 第3種 共同漁業의 소형정치망어업에서는 까나리의 어획이 많았다. 그리고 양식업으로서의 漁村契 共同漁業으로서는 굴, 미역이 많으나 漁村契員인 漁民들의 인식, 기술 및 연구, 노력의 부족과 운영의 졸렬로 92건의 면허중 그 9/10정도를 빈매(濫賣)하고 1/10정도만 직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구역에 있어서의 부족된 부분과 서해안의 것은 이후 보다 상세하게 조사 연구하여 발표토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V. 漁村契의 活性化를 위한 研究

漁村契의 活性化를 위한 方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크게 共同漁場의 協業化, 觀光漁村의 共同化, 漁民의 意識構造 改善, 漁村指導者 및 漁民後繼者 育成의 네가지로 集約하여 推進토록 한다.

1. 共同漁場의 協業化

共同漁場의 協業化란 말에는 전통적 봉쇄적 어업제도에서 漁民을 구제한다는 近代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협업을 크게 나누면 협업조직, 협업경영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협업조직이란 개별어업경영을 하면서 어업생산조직만을 他人과 협동화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시 협업작업조직과 협업이용조직으로 나눈다.

협업작업조직은 각 어민이 개별경영을 하면서 각 어선의 종업원과 개개의 어선 등을 결합하여 작업을 분담하여 조업하는 작업분업형태를 도입한 공동작업조직이고, 협업이용조직은 개별경영을 하

수 산 경 영 론 집

면서 어업생산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漁具나 漁撈機器 및 處理加工施設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동조직이다. 따라서 협업조직은 협업경영이 아니므로 不安定하고 영속성이 없는 조직상의 결점이 있다. 그러나 작업이나 시설이용만의 협업이라 할지라도 생산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의 증대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沿岸漁業部門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협업작업조직과 협업이용조직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共同所有, 共同經營이라는 협업경영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협업경영은 다시 部門協業經營과 全面協業經營으로 구분되며, 부문협업경영이란 어업자가 생산수단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면서 어업경영을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의 일부 공동화 방법이고, 전면협업경영이란 어업자가 종래 독립경영하던 어업을 폐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공동경영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면협업경영이란 종래의 단독적 개별적인 어업경영이나 부문협업경영을 새로이 발족하는 협업경영에 통합하는 漁業經營方式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협업화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협업조직에서 협업경영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협업경영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어장의 협업화 방식으로서 제1종 공동어장은 자원관리가 기초가 되고 있으며, 자원의 관리수단은 일반적으로 어구의 제한, 어구의 금지, 어구의 제한(禁漁期), 어장의 제한(禁止區域), 어획물의 채장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諸手段의 효과는 계원 상호 협동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제2·3종 공동어업의 협업화 방식으로서의 제2종 및 제3종 공동어업권에 의한 어업은 어선어업이다. 따라서 이들 어업의 공동어장에 있어서의 협업화는 곧 어선 어업의 협업화이다. 어선어업의 협업화에는 협업조직과 협업경영을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에는 ① 어촌협업방식 ② 어선의 大型化 방식 ③ 漁法 전환 방식의 세가지가 있다. 그 중 ①의 집단협업방식은 漁村契내의 어업을 종류별로 집단화하여 개개의 漁家가 어로생산작업을 공동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漁場의 선정, 漁場의 이용, 조업방법, 漁具의 조정, 出漁, 어획물운반 등등을 협업으로 하는 것이 있으며, 이 방식에서는 동종어선이 많을 때는 小作業集團으로 분할작업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 방법으로서의 生産性을 증대하고 漁船間의 생산격차를 해소시키고 漁場을 효과적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의 漁船의 大型化方式은 개개의 작은 漁船을 가지고 있는 어업자가 協業에 의해서 大型船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며 개개의 영세어가에서는 資金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등을 협업의 힘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協業의 主目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단순히 大型船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조업방법 또는 漁船이나 경영에 있어서 기존 개인 경영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③의 漁法轉換方式은 개개의 漁家에서나 또는 漁村契에서 채택되고 있는 漁業이외의 漁業이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대규모의 어업과 보다 수익성이 높은 다른 漁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방식이며, 이 방식의 조건은 개개의 漁家에서 소유하고 있던 기존 漁船을 먼저 協業에 활용하는 데 있다.

공동양식어장의 협업화 방식으로서의 공동양식에는 유영속도가 빠른 어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해조류 등의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업으로 대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공동양식어장의 일반적 방식으로서의 협업화방식을 보면 첫째, 경영체의 구분으로서 ① 漁村契 자영방식 ② 契

漁村契 活性化를 위한 研究

員小集團의 분할자영방식과 둘째, 양식대상에 의한 구분으로서 ㉠ 정착물양식업의 협업방식 ㉡ 어류양식업의 협업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의 ㉠②는 이미 제1종 공동어장의 협업화 방식에서 말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피하나, 이것은 곧 漁村契의 입장에서 본 협업방식이다. 둘째의 ㉠②은 양식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협업방식이며 양식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②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의 정착성 수산물양식업의 협업화 방식은 정착성 수산물양식업의 기상상의 성격으로 보아 관리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손을 가하면 가할수록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한 손노동체제 협업으로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자금문제와 시설이용상으로 보아 시설의 협업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작업조직과 협업이용조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조직의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장을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공동이용시킴으로써 노동시간의 절약과 단위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이동성 어류양식업으로서의 어류의 양식경영에 있어서는 대규모 경영과 소규모경영에 따라 현단계에서는 協業化의 방식을 달리할 것이다. 곧 대규모 양식경영은 大資本과 고도의 양식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영세한 漁民의 협업경영에는 부적당할 것이고, 소규모경영은 소형 가두리 등에 의한 소규모 양식기술이 개발되어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협업경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어류양식은 매일 일정한 노동을 필요로 하나 少數人으로써 비교적 많은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이 협업경영방식은 漁家の 겸업양식업으로서도 적합할 뿐아니라 부분협업양식경영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금후 어류양식업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漁船漁家の 겸업양식경영에 특히 장려할 수 있는 協業經營方式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어장의 협업화 방식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들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漁村契의 공동어장의 사정에 따라서 業種, 形態, 조직상태, 資本構成 혹은 노동력, 이익분배방식 등에 의해서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漁村契 自體나 協業하는 계원들 자신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出資配分을 전제로 한 전면어업경영은 특수한 業種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어장에 있어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 제2.3종 공동어업 즉 어선어업에서는 첫째 協業作業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部門協業經營이라 할 수 있다. 漁業은 다같이 第1次産業인 農業과 비교할 때 계획생산을 실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크므로 성급한 추진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1종 공동어장을 포함한 양식경영에서는 漁船漁業과는 달리 그 기술과 사업의 기반이 확고한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사업으로서 육성해 가야 할 단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業種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담하게 企業的인 완전협업경영방식으로 유도해가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漁村經濟秩序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개개의 漁家에서는 개별경영을 유지하면서 공동어장내의 漁船漁業과 養殖漁業을 協同으로 영위하는 協業化方式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漁家에 있어서 개별경영과 협업경영의 양 방식을 병존

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위험분산책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병존이 곤란할 것이다. 특히 연안 소규모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그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협업경영에 의한 독립기업체로서의 규모확대가 요구될 것이며, 이것이 沿岸 漁民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기업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2. 觀光漁村의 共同化

1983年度 우리나라 觀光人員의 총수는 연 119백만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국민의 관광참여율도 62%로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취향도 自然指向型이 훨씬 높아져 가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漁村들은 거의 대부분이 觀光適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漁村은 그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어업의 소득배가와 관광어촌의 공동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民泊은 漁村地域의 특색에 따라 家族型, 스포츠형, 학생형, 자연학습형, 등산기지형, 고향형들 중에서 택할 것이고, 백사청송등 관광시설을 살려야 할 것이다.

어촌관광의 유발효과로는 소득증대, 의식구조 개선, 취업기회 증가, 생활환경개선 등을 들 수 있다.

3. 漁民의 意識構造 改善

漁民의 意識構造는 크게 自立精神, 政府에 대한 태도, 協同精神, 進取性, 合理的 精神, 대가족제도에 대한 執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자립정신은 다소 강하나 일반적으로 漁民들의 自立精神이 부족하다. 政府에 대한 태도는 政府에 대한 의아심이 강하고, 協同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며, 진취성에 있어서는 진취성이 있는 자와 숙명론자가 반반정도 이다. 합리적정신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 편이고 대가족에 대한 집착은 아주 강하여 이를 불식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오늘날 잘되고 잘 사는 漁村契를 두루 살펴보면 모두 漁村契長의 선구적이고도 헌신적인 리더쉽과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參考로 1981年 10月末에 연구 조사하여 張設鎬教授가 韓國經濟學會誌에 발표한 漁民의 意識構造 調查 論文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漁民의 意識構造를 結論的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갈등속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고도경제성장에 있어서 漁村社會는 地域社會로서 면모를 완전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점차 脫皮하고 있다. 따라서 生業的 生活的 환경으로서의 우위성이나 효율성에서는 이미 그 유지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후 漁村對策은 전통적인 地域社會의 매력이나 有利性을 어떻게 近代化 合理化하여 가는데 달려있다고 하겠다. 곧 漁村을 近代的 組織으로 再編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먼저 漁業者의 생산기구를 안정화하고 생활체계를 근대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환경변화에 필요한 신기술의 습득과 정확한 정보입수체를 확립하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周年漁業體制의 確立, 어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諸條件의 정비, 漁業公害가 없는 산업의 도입, 필요한 資本의 효과적 합리적 투자방법의 확립, 漁村後繼者 양성책의 확립, 協同社會의 유지 촉진을 위한 지역조직의 강화등이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漁村指導者 및 漁民後繼者 育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를 契長으로 하고 있는 漁村契에서는 새로운 잠재적 지도자를 발굴하여 그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교육시켜 더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漁民後繼者도 많이 발굴하여 漁業別로 정신 전문기술교육을 가함과 아울러 營漁支援資金도 현재로서는 너무 적으므로 현재보다 크게 증가시켜 漁業指導員으로서 전담 지도토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84年度 政府計劃을 보면 어선어업에 271명, 증양식어업에 249명 계 520명의 어민후계자를 선발하여 지원자금 3,684백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자금 뿐만이 아니라 인원수의 증가도 요망된다.

VI. 結論 및 建議

漁村契의 活性化를 위한 方案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漁村契가 協業化하여 보다 잘사는 漁村으로 건설되어야 하겠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모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漁村契 活性化方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漁民들의 의식구조를 개혁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漁村契 協業化 阻害要因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漁民의 自生, 自助, 自主의 바탕없이는 協業化든 共同化든 그 밖의 무엇이랴도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漁民의 自生, 自助, 自主의 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漁村契를 일시에 協業化하여 活性化한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추진방향으로 이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 漁村契의 活性化를 위하여 정부당국 및 水協과 어민자신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 政府當局이 힘써 주어야 할 사항

- ㉠ 漁村契에 대한 制度的 保障과 여건조성
- ㉡ 地先漁場은 地先漁民에게 라는 漁村改革과 조사
- ㉢ 국립수산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한 기술지도의 의무화
- ㉣ 충분한 투융자를 위한 재원확보
- ㉤ 資源助成의 적극화
- ㉥ 流通政策과 가격의 보장

(나) 水協이 推進해야 할 과제

- ㉦ 指導事業의 확충과 효율화
- ㉧ 資金支援의 효율적 집행
- ㉨ 核指導者의 발굴과 육성
- ㉩ 協業化에 대한 특별교육실시
- ㉪ 漁村契 組織의 재편성

수 산 경 영 론 집

- ㉞ 漁閑期對策과 부업장려
- (다) 漁民自體가 진력하여야할 과제
 - ㉟ 自生, 自助精神의 협업화 전개
 - ㊱ 民主的 運營方式의 채택
 - ㊲ 出資金制度和 장부조직의 명백화
 - ㊳ 技術習得과 기능의 전문화
 - ㊴ 勞動組織과 노동규율의 확립
 - ㊵ 새로운 漁村社會의 風土改善 등이 그것이다.

參 考 文 獻

1. 張設鎬著, 漁村契에 관한 研究, 太和出版社, 1980.
2. 韓國水産經營學會, 法人漁村契 育성과 共同漁場 協業化에 관한 研究, 1978.
3. 김운태著, 새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전개의 실질적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附設 行政研究所.
4. 平林平治·濱本幸生 共著, 水協法, 漁業法の 解説., 日本 漁協經營センター出版部, 1982.
5. 水協中央會, 漁村契實態調査結果報告書要約, 1977.
6. 金基柱, 孔 泳共著, 水産資源學, 太和出版社, 1978.